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70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1. 10.
- 라. 회부일자 : 2022. 11. 10.

2. 제안이유

임원의 책임사항과 재정 지원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고,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8조 신설)
- 나. 재정 지원의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다.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 라. 다른 법령의 준용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37조 등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2

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5.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해 책임사항과 재정 지원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고 금천일자리 주식회사가 금천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천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금천일자리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 향상 및 재정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동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서인 일자리청년과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법률의 위임 없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게 강행규정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¹⁾에 정한

1)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외부감사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²⁾ 단서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반면 동 개정안에 대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 자문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 동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률상 주민(법인 포함)에 대한 의무부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령에 다른 금지 규정이 없다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법률자문과는 상충된 의견이 제출되었음.
- 이에 본 조례개정안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소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2)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